

정관 신·구대비표

현행	변경안
제23조 (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) ① ~ ② (생략) ③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	제23조 (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) ① ~ ② (현행과 동일) ③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83조 (징계 및 재심청구)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. ② (생략)	83조 (징계 및 재심청구)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하며 ,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. ② (현행과 동일)
<신설>	제97조(청렴의무 등) ① 법인의 임직원 및 대학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제1항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사립학교법 제72조의5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이사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제97조 (설립당초의 임원) (생략)	제98조 (설립당초의 임원) (현행과 동일)
부 칙 <신설>	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